

###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<b>제5조 (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)</b></p> <p>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<b>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1</b>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<b>자필서명, 녹취, 우편, 이메일, 전화자 동응답시스템</b>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</p> <p>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.</p> <p>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,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 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<b>서면, 우편, 팩스, 이메일등을 통해 리스계약일 즉시 또는 10 영업일 내에</b> 고객에게 교부(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)해야 합니다. <b>다만,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 실행일 이후에 교부가 가능한 문서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후에 리스실행일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.</b></p>	<p><b>제5조 (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)</b></p> <p>① -----<b>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</b>----- -----<b>서명(전자서명 포함), 기명날인, 녹취</b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b>서면, 우편, 이메일,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</b>-----<b>(단서삭제)</b></p>
<p><b>제30조 (통지의무)</b></p> <p>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 <b>&lt;단서 신설&gt;</b></p>	<p><b>제30조 (통지의무)</b></p> <p>①----- ----- -----<b>다만,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</b></p>